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임동렬 소유물건
(2025타경10628)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사법보좌관 여진숙

감정평가서번호: DY8-250731-3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全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두요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토지및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조삼제

(주)두요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지사장 박길훈 (서명또는인)

감정평가액	사천팔백칠십오만오천칠백이십원정(₩48,755,720.-)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사법보좌관 여진숙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경매2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임동렬 (2025타경10628)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8.08	2025.08.08	2025.08.12		
감정 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1 348평x- 4	토지	353	-	47,147,000
	건물	1 261x- 4 1 40.66x- 4	건물	10.17	-	1,608,720
	합계					₩48,755,72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인)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의 개요

1. 평가목적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에 소재하는 속칭 “갈말마을” 내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평가에 관련된 법적근거 및 대상목록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평가대상 목록과 형상 및 이용상황 등에 대하여는 평가명세표, 평가요향표, 위치도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치 및 기준시점

1) 기준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산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당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 기준시점: 2025년 08월 08일([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현장조사 완료일을 기준하였습니다.)

4. 평가방법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감정평가하되, 거래사례, 평가전례 등을 통해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2)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평가방법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의 도출이 요구되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 ①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행하여 산정하는 “원가방식” ,
- ②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 이용상황 · 지목 ·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을 및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과 인근지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하는 “비교표준지공시지가 기준평가방식” ,
- ③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정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방식” ,
- ④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방식” 이 있습니다.

5. 평가방법의 적용

1) 토지의 평가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 계획,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을, 생산자물가지수,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의 개별요인, 인근 보상선례 등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하였으며,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제1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공시지가기준법 이외의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른 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과의 비교·검토 및 조정은 생략하였습니다.

2) 본건은 공유지분 토지 및 건물로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위치, 점유관계 등이 확인불능하여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균단가를 산정하여 지분비율에 의거 평가하였습니다.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3) 건물의 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구조, 사용자재, 시공상태, 부대설비, 용도,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구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건물의 관리상태, 현상 등을 감안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습니다.

4) 그 밖의 사항

없습니다.

II. 토지가격의 산출

1. 대상토지의 개요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	형상	비고
2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66-3	답	238평 *1/4	답	계획관리	마을주변 농경지대	세로 (가)	부정형 완경사	
3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61-1	답	261*1/4	답	계획관리	마을주변 농경지대	세로 (가)	부정형 완경사	
4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53	대	110평 *1/4	단독주택	계획관리	순수 농촌지대	세로 (불)	사다리 완경사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2.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

1) 표준지선정기준

- 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 ② 평가대상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 ③ 평가대상토지와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 ④ 평가대상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2) 표준지의 선정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매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표준지 중에서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리적 위치와 접근성, 비교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아래 표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3) 표준지공시지가 내역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25. 01. 01 자를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리적 위치의 근접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공시기준일: 2025. 01. 01)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비고
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53	대	364	단독 주택	계획관리	순수 농촌지대	세로 (불)	사다리 완경사	77,200	
나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76	답	1,124	답	계획관리	마을주변 농경지대	세로 (가)	사다리 평지	38,900	

3. 시점수정(지가변동률: 용도지역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발표한 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의 용도지역 별 지가변동률을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 산정하여 적용하되, 가격시점 당시에 당해 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월의 지가변동률을 추정 적용하였습니다.

1) 대상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용도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	지가지수	비고
계획관리	2025.01.01 ~ 2025.08.08	0.734	1.00734	2025.01.01 ~ 2025.06.30 : 0.612 2025.06.01 ~ 2025.06.30 : 0.093 (1 + 0.00612) * (1 + 0.00093 * 39/30) ≒ 1.00734

4.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는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여 지역적제요인 대등합니다.
(지역요인 격차율 : 1.000)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5. 개별요인 비교

1) 주택지대의 조건별 비교항목

구 분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 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접면도로상태	각지, 2면획지 등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2) 농경지대의 조건별 비교항목

구 분		
조건	항목	세항목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3) 개별요인 비교치

대상 토지 (기호)	표준지 (기호)	개별요인비교						
		가로조건	접근조건	자연(환경) 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2,3	나	-	1.00	1.00	0.95	1.00	1.00	0.950
		본건 기호(2,3)은 표준지(나) 대비 토지의 형상부정 등에 의한 경작이 편부 등 획지조건에서 열세합니다.						
4	가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본건 기호(4)는 표준지(가)입니다.						

6. 그 밖의 요인보정치의 결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등에 근거하여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지가변동에 미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내 유사토지의 정상적인 가격수준과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가격격차를 보정하여 평가가액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보정이 필요합니다.

2) 관련근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2항, 대법원판례[(01두3808(2003.02.28.)), 2003다38207(2004.05.14.선고), 2002두5054(2003.07.25.선고)], 국토교통부유권해석[건설부토정30241-36538(1991.12.28.)] 등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3) 산정방법

표준지의 공시지가 기준가액과 평가사례 또는 거래사례 기준 표준지가액과의 격차를 검토하여 산정하되 인근지역의 거래가능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text{그 밖의 요인} = \frac{\text{평가선례(거래사례)기준 표준지가액}}{\text{표준지의 가격시점 현재가격}}$$

- 평가선례(거래사례)기준 표준지가액 = 평가선례(거래사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
- 표준지의 가격시점 현재가격 =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4) 인근지역 평가선례 및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거래금액 (평가금액) (원/㎡)	기준시점	평가목적	비고
1	건천읍 대곡리 60	답	계획관리	101,000	2023.09.22	담보	
2	건천읍 대곡리 58	대	계획관리	196,000	2024.12.17	담보	
3	건천읍 대곡리 139	전	계획관리	128,000	2024.06.05	경매	
4	건천읍 대곡리 12-2	답	계획관리	96,000	2023.10.13	경매	
5	건천읍 대곡리 75-1	전	계획관리	142,857	2023.06.25	거래사례	

*자료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정보체계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5) 그 밖의 요인보정치의 결정

본건과 비교 가능한 평가선례 및 거래사례의 지가수준과 최근 부동산 경기의 추세 및 전반적인 경기상황 등으로 보아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지가수준이 공시지가 수준과 괴리되어 현실가격의 반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적절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였습니다.

7. 토지가격의 결정

상기 제요인 및 기타 가격 형성상의 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토지가격을 아래 산식에 의거 결정하였습니다.

$$* \text{산식: 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치} \times \text{지역요인 비교치} \times \text{개별요인 비교치} \\ \times \text{그 밖의 요인 비교치} = \text{토지가격(원/㎡)}$$

기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시산가격 (원/㎡)	평가가격 (원/㎡)	비고
2	38,900	1.00734	1.00	0.950	3.10	115,401	115,000	
3	38,900	1.00734	1.00	0.950	3.10	115,401	115,000	
4	77,200	1.00734	1.00	1.000	2.40	186,640	187,000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Ⅲ. 건물가격의 산출

1. 건물의 개요

일련 번호	구조	용도	건축면적		층수	사용 승인일	비고
			공부	사정			
1-가	목조 후형기와지붕 단층	주택	21.82* 1/4	5.46	1	1934	실제 “강판개량지붕”
1-나	목조 후형기와지붕 단층	주택	18.84* 1/4	4.71	1	1934	실제 “세멘기와지붕 및 창고”

2. 재조달원가의 결정

사례의 건물비용에 대한 자료수집이 곤란한 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 및 주택신축단가표(한국감정평가사협회)등을 이용하여 간접법에 의한 재조달원가를 결정하되, 건물신축비용의 지역적 격차, 내·외부 마감수준, 부대설비 및 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1) 표준건축비

(한국부동산연구원 2024년도 표준건물신축단가표 참조)

분류번호	용도	구조				내용년수
01-01-04-01	일반주택	블록조/목조지붕틀/시멘트기와				40 (35-45)
급수	1	2	3	4	5	
표준단가	-	-	-	1,179,000	1,002,000	

분류번호	용도	구조				내용년수
05-04-01-02	일반창고	목조/목조지붕틀(총고4.5m)/소골슬레이트				25 (20-30)
급수	1	2	3	4	5	
표준단가	-	-	-	-	505,000	

2) 부대설비 보정

설비의 종류	설비내역	보정단가 (원/㎡)
전기설비	기본적인 전기설비 및 위생설비 등	본 건물의 부대설비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정하지 아니하고 재조달원가 결정과정에서 감안하였습니다.
위생설비·급배수설비		
난방설비		
기타설비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3) 재조달원가의 결정

기호	층 구분	재조달원가 (원/㎡)	비고
1-가	1층	1,360,000	
1-나	1층	900,000	

3. 감가수정 및 건물적용단가 결정

1) 감가수정이란 함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감가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그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적정화하는것입니다.

2) [감정평가실무기준]400.3.2.1.3.② 및 ③에서는 이러한 감가수정방법으로 경제적내용년수를 표준으로 하여 정액법, 정률법 및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물건에 적절한 방법에 따르되,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법 등을 병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평가대상물건은 그 특성에 적합한 정액법을 적용하되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습니다.

3) 건물적용단가 결정

기호	층수	재조달원가	내용년수	유효 경과년수	잔존가치율	적용단가	비고
1-가	1	1,360,000	50	42	8/50	217,000	
1-나	1	900,000	50	45	5/50	90,000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4) 건물감정평가액

기호	층수	사정면적	단가	평가금액	비고
1-가	1	21.82*1/4 ≒ 5.46	217,000	1,184,820	임동렬 지분
1-나	1	18.84*1/4 ≒ 4.71	90,000	423,900	임동렬 지분
합계				<u>₩1,608,720-</u>	

IV. 감정평가금액 결정

1. 감정평가금액

구분		면적(㎡)		감정평가액(원)		비고
종별	일련번호	공부	사정	단가	금액	
토지	2	238평*1/4	196.75	115,000	22,626,250	
	3	261*1/4	65.25	115,000	7,503,750	
	4	110평*1/4	91	187,000	17,017,000	
건물	1-가	21.82*1/4	5.46	217,000	1,184,820	
	1-나	18.84*1/4	4.71	90,000	423,900	
감정평가액 (합계)		-			<u>48,755,720</u>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2. 결정의견

상기 평가선례와 거래사례,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바, 이를 평가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가(원/㎡)	금액(원)	
1-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대곡갈밭길 28-9	53 위 지상	주택	목조 후형기와지붕 단층	1 21.82x- 4	5.46	217,000	1,184,820	1,360,000 x 8/50 관찰감가 실제"강판 개량지붕" 임동렬 지분 전부
1-나	"	" 위 지상	주택	목조 후형기와지붕 단층	1 18.84x- 4	4.71	90,000	423,900	900,000 x 5/50 관찰감가 실제"세멘 기와지붕 및 창고" 임동렬 지분 전부
2.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66-3	답	계획관리지역	1 238평x- 4	196.75	115,000	22,626,250	임동렬 지분 전부
3.	"	61-1	답	계획관리지역	1 261x- 4	65.25	115,000	7,503,750	임동렬 지분 전부
4.	"	53	대	계획관리지역	1 110평x- 4	91	187,000	17,017,000	임동렬 지분 전부
합 계								₩48,755,720.-	
				이	하	여	백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에 소재하는 속칭 "갈말마을" 내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 일대는 자연부락 내 농가주택, 마을주변의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 가능한 상태이며, 간선도로와 거리, 인근취락과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2,3):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 완경사지대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2): 본건 북측으로 폭 약 2.5미터 내외의 포장농로와 접합니다.

기호(3): 본건 남측으로 폭 약 2.5미터 내외의 포장농로와 접합니다.

기호(4):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2.5미터 내외의 마을안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2~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2) 기 타: 없습니다.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 | (2) 이용상태 | (3) 설비내역 |
|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건물의 구조

기호(1-가): 목조 강판개량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1934년]
 외벽: 세멘물탈 마감,
 내벽: 벽지 마감,
 바닥: 장판지 마감,
 창호: 목재창호입니다.

기호(1-나): 목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1934년]
 내.외벽: 황토 마감,
 바닥: 세멘물탈 및 장판지 마감,
 창호: 목재창호입니다.

(2) 이용상태

기호(1-가): 단독주택
 기호(1-나): 창고

(3) 설비내역

기호(1-가)건물은 급.배수설비 및 유류온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본건 지상에 부합물이 있으나,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4) 부합물 및 종물

(2) 이용상태
(5) 공부와의 차이

(3) 설비내역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5) 공부와의 차이

기호(1-가): 공부상 지붕은 "목조 후형기와지붕"이나, 실제 "강판개량지붕"입니다.
기호(1-나): 공부상 지붕은 "목조 후형기와지붕"이나, 실제 "세멘기와지붕"이며,
공부상 용도는 "주택"이나 실제 "창고"로 이용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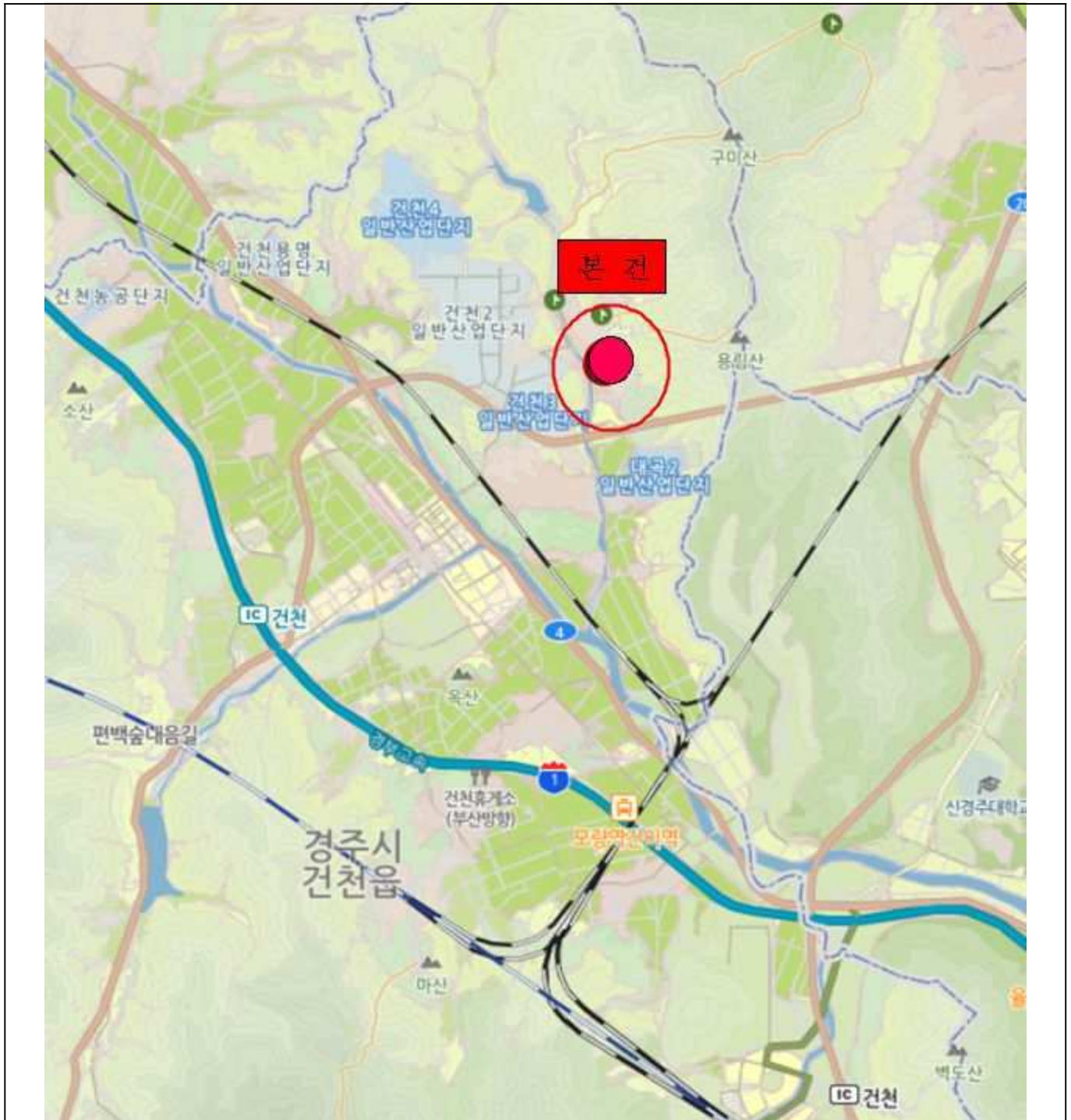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기 타: 없습니다.
- 2)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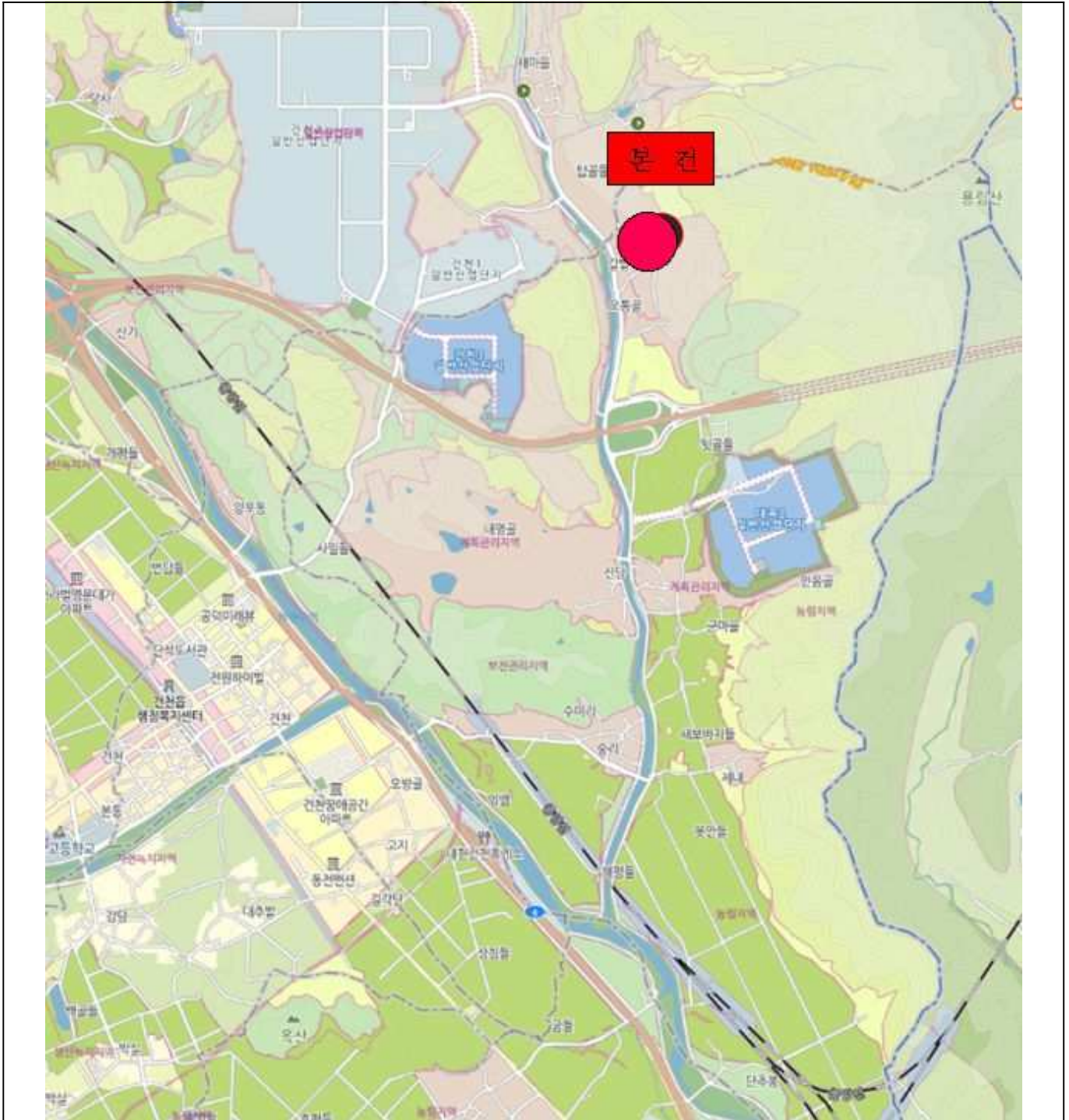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53외
-----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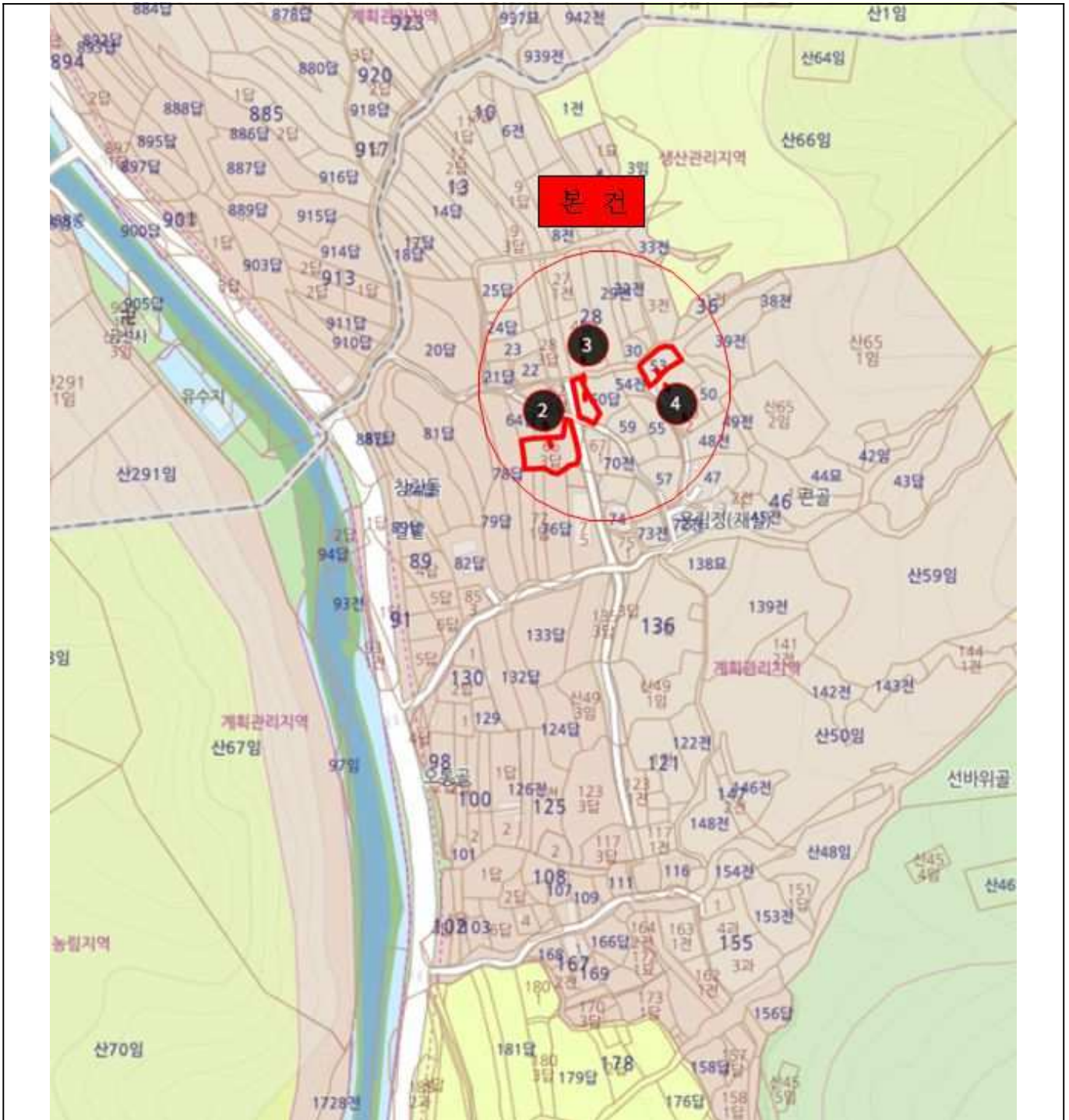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53외
-----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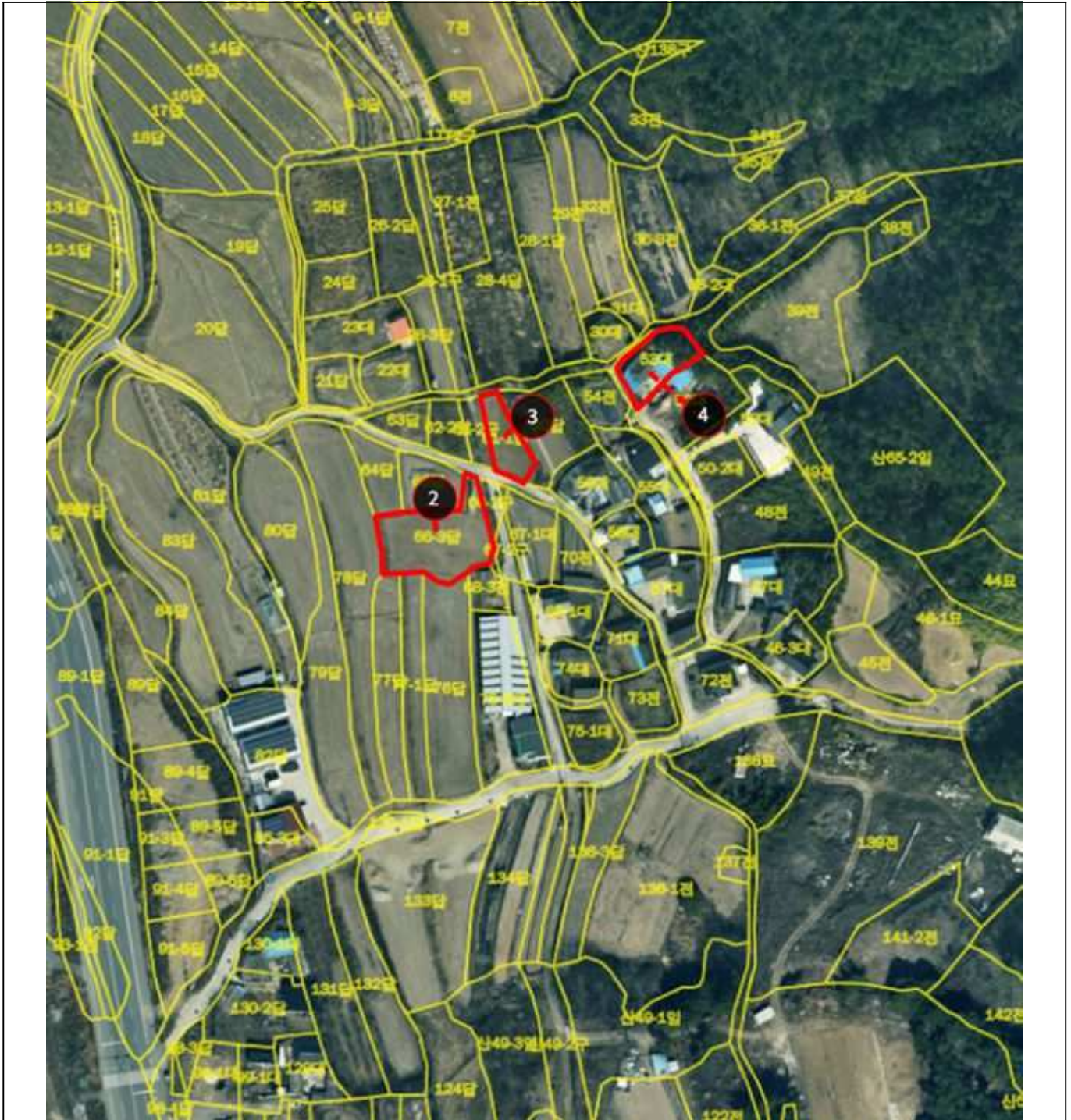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53외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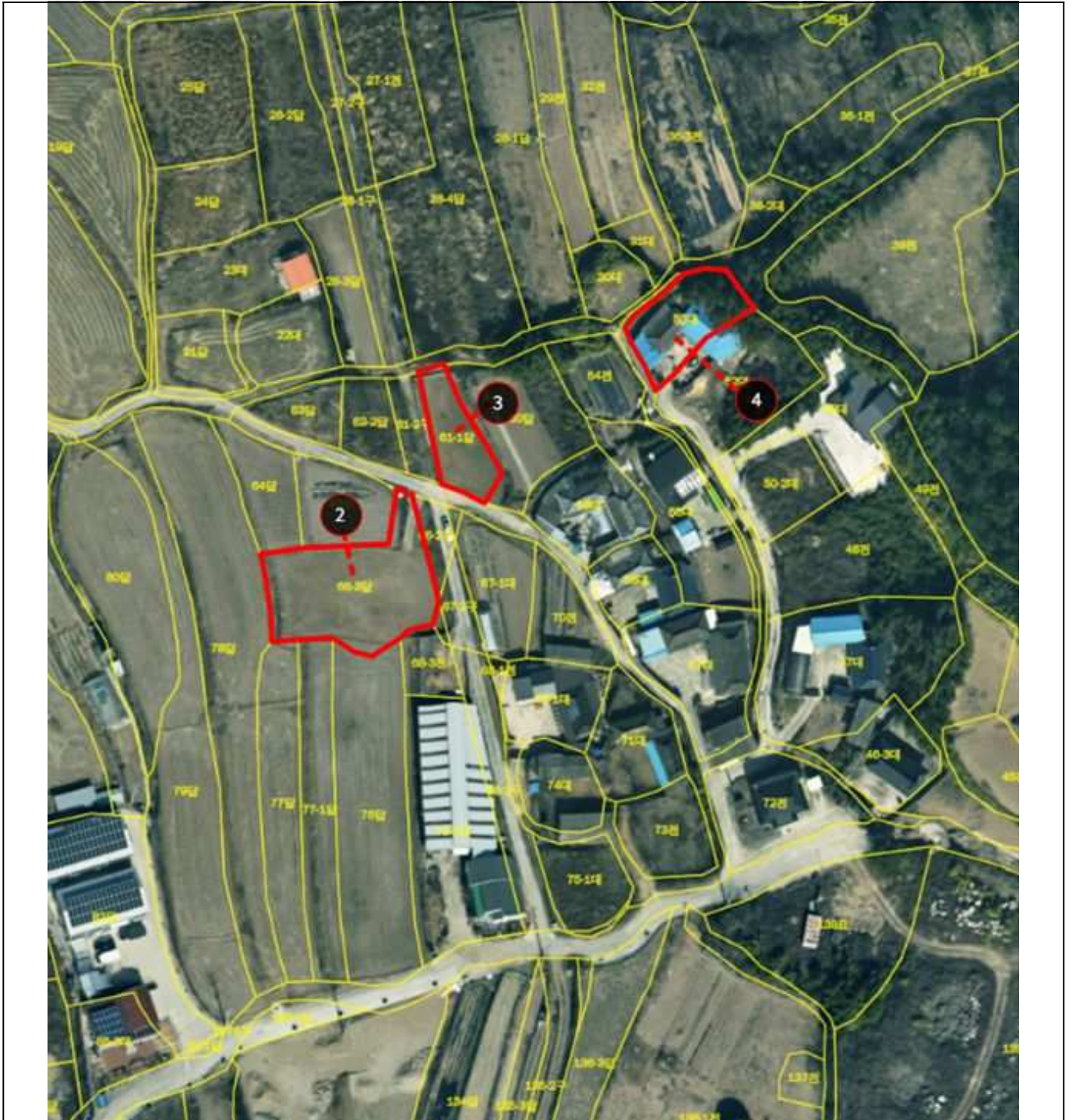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53외
-----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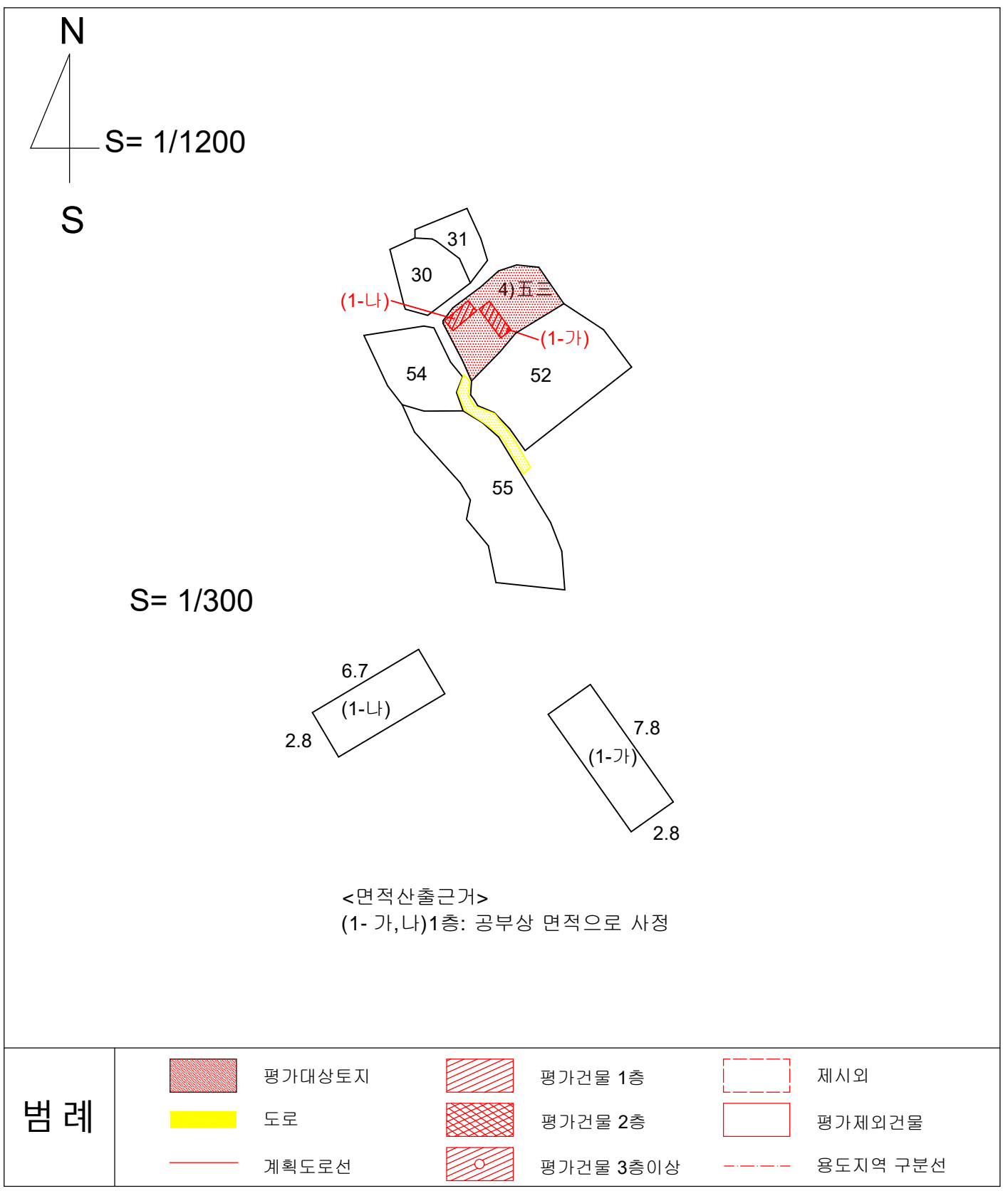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53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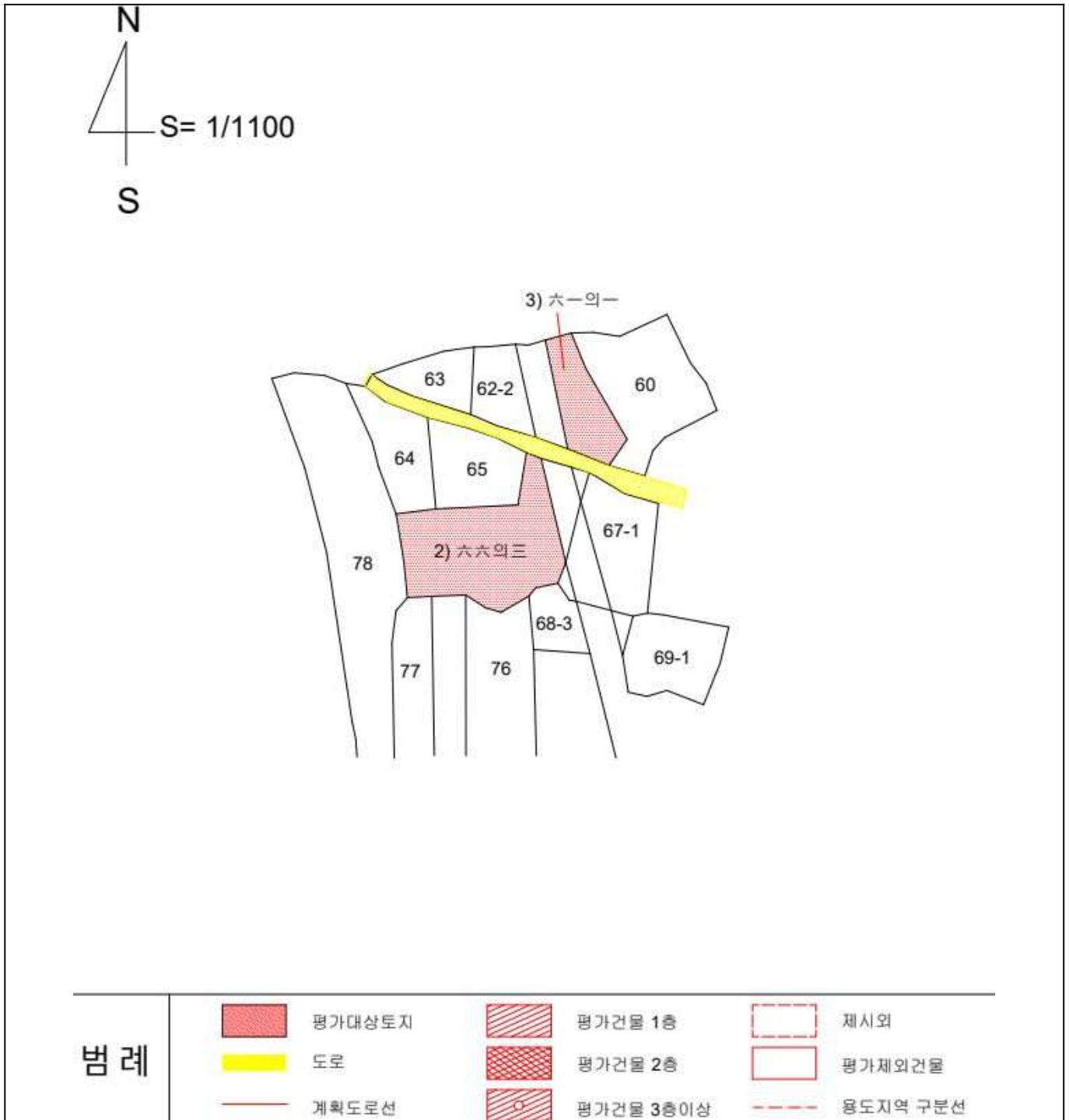


현 황 도

(지적 및 건물개황도)



지 적 도



사 진 용 지



【 본건(기호2) 전경 】



【 본건(기호2) 부근 전경 】

사 진 용 지



【 본건(기호3) 전경 】



【 본건(기호3) 전경 】

사 진 용 지



【 본건 부근 전경 】



【 본건(기호1,4) 전경 】

사 진 용 지



【 본건(기호1,4) 전경 】



【 본건(기호1-가) 전경 】

사 진 용 지



【 본건(기호1-가) 내부 전경 】



【 본건(기호1-나) 전경 】

사 진 용 지



【 본건(기호1-나) 내부 전경 】



【 기호(1,4) 부근 전경 】